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3.

여성가족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7월 8일, 백혜련의원 등 12인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7월 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- 제418회국회(정기회)

-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(2024. 9. 4.)

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부

- 제423회국회(임시회)

-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(2025. 3. 5.)

상정, 축조심사, 의결(원안가결)

-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(2025. 3. 6.)

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국회의원 백혜련)

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보호·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.

최근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,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톱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4항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이 옥 순)

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·지원시설에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·지원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4항).

현행	개정안
제15조(피해자 보호·지원) ① ~ ③ (생략)	제15조(피해자 보호·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피해자는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	④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보호·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	----- -----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.

현행법 제15조제4항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는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보호·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

여성폭력 피해자는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담소,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¹⁾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

1)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상담소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(이하 “상담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·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·④ (생략)

제12조(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종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(이하 “보호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~⑤ (생략)

제18조(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, 치료,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, 수사지원,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(이하 “통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담소와 보호시설²⁾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시설,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³⁾ 등을 이용할 수 있음.

이에 따라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·지원시설로, 여성긴급전화센터 1366 17개소, 가정폭력·성폭력 통합상담소 54개, 해바라기센터 40개, 성폭력지원시설 135개, 가정폭력지원시설 123개, 성매매·이주여성 지원시설 150개 등 총 519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.

개정안은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“23.

-
-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- 2)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상담소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(이하 “상담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·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
- 제7조(보호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(이하 “보호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(이하 “사회복지법인”이라 한다)과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(認可)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·④ (생 략)
- 3)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지원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·④ (생 략)
- 제15조(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 ~ ⑤ (생 략)
- 제17조(상담소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(이하 “상담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·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 ~ ⑤ (생 략)

1.17.)되어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·지원시설에 같은 법 제8조4)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도 포함하려는 것임.

현행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제1호5)의 “여성폭력”의 정의에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와 더불어 “지속적 괴롭힘 행위”가 포함되어 있으며,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·지원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특별히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6).

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상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·지원시설의 내용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.

-
- 4)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③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④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5) 「여성방지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여성폭력”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·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.
- 6) 다만, 현재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새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은 없는 상황이며,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위탁 규정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등 기존의 지원시설과 동일하므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 새로 설치·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설이 추가되는 효과는 없음.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법안심사소위원장 : 김한규)

원안가결

6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원안가결

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체계자구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※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:

1.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 호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
“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피해자 보호 · 지원) ① ~ ③ (생 략) ④ 피해자는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 <u>성매매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</u> 」 등에 따른 보호 · 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	제15조(피해자 보호 ·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「 <u>성매매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</u> 」, 「 <u>스토킹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</u> 」----- ----- -----.